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269

제출년월일 : 2013. 11 .11. 제 출 자 : 이정율의워외2

1. 제안이유

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함은 물론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영세농업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의 지원사업 대상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(안 제5조)
 - 부엌개량, 화장실 개량, 지붕개량 ⇒ 농기계 구입(병해충 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 - 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⇒ 농업용 자채구입(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)
- 나. 종전의 지원기준 단위당 사업비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,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 ⇒ 100만원이상 100분의 70이내,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 (안 제6조)

- 다. 예산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가면적 2,000㎡이하인 농가와 다문화 가정 농가를 우선선정(안 제7조)
- 라. 이중지원 금지조항 신설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 『별 첨』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집행기관 의견수렴('13.10. 2. ~ '13.10.18) : 일부의견 반영
- 라. 기 타
- (1) 입법예고(13.10.21. ~13.11.10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주거환경 개선"을 "농업생산성 향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농기계 구입(병해충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- 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)
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 중 "이상 500만원 이하인"을 "이상"으로, "60"을 "7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00만원"을 "700만원"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,000㎡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하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이중지원 금지)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사업) 지원사업은 저	제5조(지원사업)
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	
증대 및 <u>주거환경 개선</u> 등을 위	<u>농업생산성 향상</u>
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	
다.	
1. 부엌개량, 화장실 개량, 지	1. 농기계 구입(병해충방제기,
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	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2. 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등	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지주
<u>소득증대사업</u>	목, 비료 및 농약 등)
3. 비닐하우스 자재, 과수 지주	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목, 비료 및 농약 등 농업용	인정하는 사업
<u>자재구입</u>	
제6조(지원기준) ① 저소득 농업	제6조(지원기준) ①
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	
업비가 100만원 <u>이상 500만원</u>	<u>이상</u>
<u>이하인</u>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	
사업비의 100분의 <u>60</u> 이내로 한	- <u>70</u>
다.	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	②
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	
연간 한차례 <u>300만원</u> 이내로 한	<u>700만원</u>
다.	

략)

<신 설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・② (생 제7조(신청 및 선정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

>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 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 는 농지소유 면적이 2,000m²이 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.

제11조(이중지원 금지) 다른 법규 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 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 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4. 작성자

작성자	의원 이정율
연락처	(033) 330 - 2508

관 계 법 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